

제43호(2013.2.1)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

강창용

1.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요	3
2. 농기계임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7
3. 정책 개선 방안	14

감 수: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02-3299-4221	jhkim@krei.re.kr
내용 문의:	강창용	선임연구위원	02-3299-4273	cykang@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농기계임대사업은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면서 차기 정부도 관심을 갖고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것임.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많은 사업소(2015년까지 당초 350개소에서 400개소 이상으로 확대)를 육성한다고 공약하였으며, 아울러 국회에서는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도 서두르고 있음.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은 발작물 중심으로 영세소농과 노령인 그리고 여성농업인과 신규 취업농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기계와 작업기를 임대해 주는 사업임. 2011년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679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22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당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고추, 마늘, 양파 등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정부의 의지는 확고함.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은 강력한 농업인들의 호응 하에 발작물 농업기계화 촉진과 아울러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등의 효과를 거둬왔다고 평가됨. 하지만 경영수지 면에서 운영 적자가 확대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보유 농기계는 증가하는 반면에 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며, 임대사업소 조직의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비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임. 아울러 부수적으로 보유 농기계 범위의 한계, 원거리 이용자의 불편, 작업사고 발생 시 처리 문제 등의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음.

농기계임대사업의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첫째, 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명료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자칫 다양한 현실적 요구에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임. 둘째,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필요함. 사업자금의 기금화도 검토가 필요함. 셋째, 수혜 농업인들의 형평성 제고와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분소 운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정부 조직에서 이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조직화 혹은 사회적 기업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넷째,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함. 또한 관리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농기계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요

1.1. 배경

- 농기계나 작업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 기계계를 필두로 1980~90년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한 기계화영농단(1981~)이나 위탁영농회사(1991~) 등이 있었음
 - 그러나 농업인 몇몇이 농기계 구입주체가 되고 이용을 함께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소유와 관리 및 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농업인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농업인 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대부분의 공동이용조직 내 농기계는 사유화로 귀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 증대와 농가부채 경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기계 비용을 줄여야 했고, 이것이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2002~2006)에 반영되어 지금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시작되었음
 - 특히 2000년까지 수도작에 대한 기계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밭작물의 기계화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음. 사용일수가 매우 제한적인 밭농사용 농기계와 작업기의 공급·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밭작물 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시작됨

1.2. 추진 실적

-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2003~2011년간 총 220개소를 지원했으며, 2015년까지 350개소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정부의 계획이 달성될 경우 2015년에는 시·군당 2~3개소의 임대사업소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사업비 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업소당 단가가 과거 2.5억 원 수준에서 최근 10억 원 수준으로, 국고 지원율이 초창기 30%에서 2005년 이후 50%로 20% 포인트 증가하였음. 이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지방자체단체 상황을 고려한 것임

- 농기계임대사업의 연간 지원규모는 2010년 500억 원까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2011년도에는 전년도의 절반인 250억 원으로 감액됨

표 1. 농기계임대사업 실적

연도	시행주체	사업단가 (억 원)	국고 지원율 (%)	사업비(억 원)			조성 개수
				계	국고	지방비	
2003	지역농협	2.5	30.0	14	4	10	5
2004	시군	2.5	30.0	20	6	14	8
2005	시군	2.5	50.0	20	10	10	8
2006	시군	3.0	50.0	38	18	20	12
2007	시군	5.0	50.0	107	50	57	20
2008	시군	8.0	50.0	330	165	165	39
2009	시군	10.0	50.0	400	200	200	42
2010	시군	6.0~12.0	50.0	500	250	250	61
2011	시군	10.0	50.0	250	125	125	25
누계				1,679	828	851	22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협의회」, 2012.2.

-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서는 주로 밭작물에 사용하는 농기계와 부속작업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파종기와 탈곡기 등이 주력임
 -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이후 2011년까지 155종 20천대(개소당 90대)의 농기계가 농촌에서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활용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관리와 운영은 행정기관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함께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유 농기계는 대부분 단기 임대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임대용 농기계 운영을 지역농협에 위임하고 있으나 많은 수는 아님. 지역농협이나 농업단체로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가 일반적인데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임

1.3. 향후 사업계획

- 정부는 2012~2016년 농업기계화기본계획 내에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기계화’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확대’를 둬
 -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농기계 공동이용확대’와 ‘밭작물 기계 보급과 일관 기계화 촉진’을 세움. 즉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늘, 양파, 고추와 콩 관련 일관 기계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5년까지 임대사업소를 3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밭작물 기계화를 위해 2012년부터는 고추·마늘 전용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종 선택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기종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고, 기종을 다양화하며 충분히 확보하여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임
 - 동시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강화, 우수 브랜드 경영체나 지역 특화작목 우선 지원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임

표 2. 농기계임대사업추진계획

단위: 개소, 억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사업량	30	30	30	30	30	150
단가	10	10	10	10	10	
예산	150	150	150	150	150	75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계화기본계획(’12~16)』, 2011.

- 정부는 2015년까지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총 350개(누적 수)로 확대 설치하고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8개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임¹

1 밭작물용 임대사업(누계) 2011/220개소, 2012/245개소, 2015/ 350개소
고추·마늘 전용임대사업(누계) 2012/5개소 2012/20개소 2015/38개소

- 2012년도의 사업규모는 2011년의 250억 원에 비해 5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의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에 신규로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비 50억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표 3. 농기계임대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	2011	2012	2013년 이후
합 계		92,900	50,000	25,000	30,000	138,000
국 고 지방비		45,300	25,000	12,500	15,000	69,000
		47,600	25,000	12,500	15,000	69,000
밭농사용 임대사업	소계	92,900	50,000	25,000	25,000	105,000
	국고	45,300	25,000	12,500	12,500	52,500
	지방비	47,600	25,000	12,500	12,500	52,500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	소계	0	0	0	5,000	33,000
	국고	0	0	0	2,500	16,500
	지방비	0	0	0	2,500	16,500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농림수산물사업 시행지침서」, 2012.

- 2012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총 사업량은 30개소인데, 밭농사용 임대사업은 25개소,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는 5개소임
 - 사업소당 지원은 10억 원, 국고와 지방비가 50:50의 비율로 투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액을 조정할 수는 있음
 - 신설사업의 경우 10억 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의 보관창고(총 사업비 50% 이내)와 사후봉사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원 자금을 가지고 내용년수가 도래한 대체 농기계 구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농기계는 별도의 자금으로 구입해야 함
 - 기존의 경우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구입하여 이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음

2. 농기계임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²

2.1. 농업인의 높은 호응도

- 2003년부터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은 저렴한 농기계임대료(사용료)를 통해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었고, 농기계 이용률 자체를 높였으며, 영농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임³
 - 농기계 자가구입 대비 비용절감 효과는 감자 84%, 콩과 마늘 77%, 조사료 97%(ha, 단기임대 기준)였고, 농기계 구입비용절감액(누계)은 2007년에 338억 원, 2008년 889억 원, 2010년 2,429억 원, 2011년 3,448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임
 - 임대농기계 대당 작업일수가 7일(2010)로서 전국 평균 작업일수 1.5일에 비해 길고, 일부 특화작목(콩, 인삼 등)과 조사료 기계화를 촉진하여 밭농사의 기계화율이 2010년도 50%까지 상승함
 - 특히 밭농사 농가의 호응도가 높는데, 2011년도 주요정책 호응도 조사결과 53개 과제 중 3위로 나타났다고 함

2.2. 경영수지 적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유형은 단기와 장기로 구성되는데, 단기가 전체의 75.8%(91/120개소)로서 절대적임
 - 밭작물 중심의 소형기계와 작업기가 중심이 되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바뀌게 됨으로써 단기 임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2 이에 대해서는 강창용 외,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부, 2003, 신승엽, “지자체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협의회」,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2012.2.23~2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2011개정, 2011.12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3 이범섭, “농업기계화기본계획(2012~2016)”,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협의회」,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2012.2.23~24. 서정호, “농업기계임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협의회」,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2012.2.23~24.

표 4. 지자체 임대사업 유형

기관수	임대유형(%)			
	단기	장기	단기+장기	단기+대행
120	91	5	11	13
	75.8	4.2	9.2	10.8

자료: 신승엽(2012)

- 단기 임대로 인한 관리 업무의 증가, 저렴한 농기계와 부속작업기의 임대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분소의 설치, 늘어나는 임대용 농기계와 작업기를 위한 보관장소와 수리설비, 소요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증가 등으로 거의 모든 농기계임대사업은 경영면에서 적자임
- 일반회계의 기준에 의해 간이 계산한 A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영수지⁴는 연간 약 604,815천 원의 적자임
 - 인건비, 고정자산과 설비 관련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수 운영비만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111,654천 원(고정자산운영비와 직접경상운영비 등: 181,044천 원-임대료: 69,390천 원)의 적자가 발생함
 - 따라서 매년 일정한 예산으로 지원(2011년 3억 원, 2012년 4.44억 원)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체가 어려우며, 임대료만으로 경영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10배 정도 수수료(674,205천 원/69,390천 원 =9.7)를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표 5. A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경영수지(2011)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 임대료: 69,390천 원	○ 인건비: 136,000천 원 ○ 농기계와 시설장비 등 감가상각 : 357,161천 원 ○ 고정자산운영비와 직접경상운영비 등 : 181,044천 원
○ 적자: 604,815천 원	
674,205천 원	674,205천 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4 4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는 모두 적자이며, 이러한 결과는 거의 모든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2.3. 운영 재원의 부족

- 농기계임대사업에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의 사업초기 해당 농기계와 작업기 구입예산과 지방정부의 해당 농기계와 작업기 구입 그리고 운영예산임
 - 중앙정부 지원예산의 명목은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사업의 시작에 필요한 고정자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용년수가 지난 해당농기계와 작업기 구입에는 사용이 불가능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리고 연도에 따라 천차만별임
- 재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농기계임대수입을 이용하여 신규농기계와 작업기 및 대체농기계를 구입해야 하지만, 대농업인 지원사업이다 보니 임대료가 매우 낮고 그로 인해 임대료 수입이 작아서 사업의 운영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 6. J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사용료(1일 기준)

기 종 명		사용료(원)	기 종 명	사용료(원)
트랙터 (로더장착 기대 포함)	60마력 미만	48,000	고소작업차	75,000
	60~80마력 미만	61,000	베일러	60,000
	80~100마력 미만	81,000	랩핑기	43,000
	100마력 이상	96,000	농용굴삭기	41,000
파쇄기	소형	12,000	돌채취기	41,000
	35~60마력	48,000	콩 정선·선별기	39,000
	60마력 이상	64,000	퇴비살포기	38,000
로타리	190cm 미만	13,000	파이프밴딩성형기	21,000
	190cm~220cm 미만	18,000	반전집초기	20,000
	220cm 이상	23,000	땅속작물수확기	16,000
파종기	트랙터용	12,000	쟁기	12,000
	인력	5,000	동력제초기	10,000
콤바인		119,000	비료살포기	10,000
스키로더		101,000	운반차	40,000
승용관리기		35,000	운반비용(편도)	50,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보다도 더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내용년수까지의 농기계 자산의 현금 회수율은 10~50% 수준에 불과함.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대체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 중단도 예상됨
- J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연간 임대료 수입은 49,978천 원인데, 이를 위한 고정자산운영비와 직접경상운영비만도 83,790천 원에 이르러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내하기 어려움
 - 농기계와 고정자산 감가상각, 인건비 등을 지방정부에서 매년 1~2억 원씩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이 유지되고 있음

2.4. 조직 확대의 가능성

-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와 분산된 농업인들의 수요 대응을 위해 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전체 사업소의 25.8%, 31개소에서 분소를 설치·활용하고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이 확대될 경우 분소를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개소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차기정부에서 당초의 정부계획보다 많은 사업소(2015년 350개에서 400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의 호응도가 높다보니 사업과 사업분소의 확장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기계임대사업의 조직은 점차 확대일로에 있지만 확대 시의 인력과 운영자금 및 운영 방법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 N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조만간 총 3개의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G 기술센터 역시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필요한 인력의 충원은 불확실한 상황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운영이 불투명함
 - 농기계임대사업의 조직 확대는 사업비 확보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하지 않으면 자칫 소속 직원 고용 문제 및 농기계와 시설 등의 자산관리와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2.5. 인력 수요 증대

- 농기계임대사업의 성격상 운영 농기계가 밭작물과 지역 특수작목에 사용되는 중소형 농기계와 작업기이다 보니 계절적이면서도 사용시간이 짧고, 이에 따라 임대 행위가 자주 이뤄져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함
- A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면서 농기계임대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84종⁵에 달함

표 7. A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 종류(2011)

성 격	기 종
트랙터 부착용 (44종)	과수원제초기, 그레이더, 다목적 파종기, 무논 정지기, 비료살포기, 배토기, 석회살포기, 이랑쟁기, 콩탈곡기, 페비닐 수거기, 고구마두둑 성형기, 고구마수확기, 고구마줄기 제초기, 구굴기 등
관리기 부착용 (6종)	고구마줄기제초기, 관리기, 로타리, 일륜관리기, 일륜관리기용 구굴기, 페비닐 수거기, 휴립복토기
경운기용(5종)	동력경운기, 땅속작물수확기, 로타리, 과수원제초기, 퇴비살포기,
전기사용 (12종)	마늘쪽선별기, 벼씨발아기, 육묘파종기, 종자(콩)선별기, 콩탈곡기, 콩풍구, 탈망기, 파이프성형기, 파이프정형기, 마늘쪽분리기, 차도온탕소독기, 일괄콩정선선별기,
차주형 (20종)	고압세척기, 동력배토기, 동력중경제초기, 미스트기, 보행이앙기, 사다리, 인력분무기, 인력비닐파복기, 인력파종기, 전정가위, 콩예취기, 승용관리기, 잔가지파쇄기, 주행형동력분무기, 과수원용승용제초기 등
승용관리기용 (2종)	비료살포기, 동력분무기,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 농업기술센터 1개소당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자는 평균 5명 정도인데,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수리가 가능한 인력은 정규직 1명에 불과함
- 잦은 농기계 운전, 작업자의 교체로 인해 고장빈발을 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장 시 사전·후 관리와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보유 농기계의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안고 있음
- N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총 16명이 농기계임대사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10명이 비정규직인데 장기고용이 어렵고, 비숙련 직원을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일고나 계절고를 활용하려고 하지만 적당한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움

⁵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99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명의 경우를 제외함.

표 8. 임대사업 운영기관 및 인원 현황

구 분		담당 인원별 운영기관 및 인원수					
		1~2명	3~4명	5~6명	7~9명	10명 이상	계(평균)
운영기관(개소, 비율)		14(11.7)	46(38.3)	39(32.5)	13(10.8)	8(6.7)	120(100)
인원수 (명/개소)	정규직	1.3	2.3	3.1	4.2	5.4	(2.8)
	계약직	0.3	1.2	2.4	4.2	5.9	(2.2)
	계	1.6	3.5	5.5	8.4	11.3	(5.0)

자료: 신승엽(2012)

2.6.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

-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임대용 농기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임대농기계가 작업기 중심의 소형농기계에 집중되어 있음
 - 농한기에 동일기종에 대한 수요 폭등으로 이용이 어렵고, 임대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이용이 어려움
 -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 이용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용 절차와 조건이 조금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음

표 9.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 농업인 의견

- ▶ 임대 농기계와 작업기 제한적, 지역특수기계 보유 미흡
- ▶ 너무 소규모 농기계만 있음.
- ▶ 사용시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용하기 어려움
- ▶ 임대기간 단기(1~2일)
- ▶ 수리불량, 고장 발생 시 대처 애로
- ▶ 원거리 지역의 농업인은 이용하기 어려움
- ▶ 이용절차, 임대조건이 까다로움
- ▶ 이용,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 ▶ 임대료가 비쌌 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 실무책임자의 애로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역시 관련 인력 부족인데, 그럼에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관련 직원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음
 - 임차 농업인들의 농기계 관리 소홀로 고장이 잦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다양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요구는 너무 많아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런 사정을 알아주지 않음

표 10.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 농업기술센터

- ▶ 전문 인력 확보
- ▶ 영농철 6개월간 휴일근무로 직원들 사기 저하
- ▶ 농기계 관리: 농기계 운반, 잦은 고장, 수리비 과다 지출
- ▶ 농업인과의 소통 애로 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2.5. 기타 사항

- 농기계의 실제 내용연수 단축 및 보험 미가입 문제가 제기됨
- 여러 농업인들이 사용하다보니 자연히 법적 내용연수보다 짧게 사용하는 상황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보니 법적기간 동안 관리해야 하는 현장과 법과의 관리기간 상 괴리가 있음
 - 108개 운영기관 가운데 임대기종에 대해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한 비율은 50%에 불과하며,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 심각한 민원의 소지가 있음

표 11. 임대기종 공제(보험) 가입 기종

구 분	전 기종	대부분	일부 기종	가입하지 않음	계
운영기관 수	27	27	36	18	108
(비율)	(25.0)	(25.0)	(33.3)	(16.7)	(100)

자료: 신승엽(2012)

3. 정책 개선 방안

□ 사업의 목적과 대상의 명료화

-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은 농기계임대사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농촌 내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범위로 한정해서 추진해야 함
 - 발작물 중심, 노약자와 여성 농업인, 신규 취업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지향하는 목표달성에도 적합하다고 여겨지지만, 만약 농촌의 기간농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중대형 농기계와 수도작 평야지예까지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기간농가와의 갈등이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상치될 수 있음

□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과연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얼마나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인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사업으로 유지·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지속적인 보장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지원자금의 경우 대체 농기계 구입과 운영비까지도 포함해야 함.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별히 과거 경기도에서 구상했던 농기계임대사업비의 기금화와 별도 조직화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현안임

□ 적정수의 분소를 설치 운영

- 수해농업인들의 형평성 제고와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현재 시·군 단위 1개소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수개소로 분산 운영하는 것도 중요함
 - 분소 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농업인들의 불편은 감소할지 모르지만 정책적인 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수로 확대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4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임

-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부조직에서 이 사업을 분리해서 새로운 정부지원 조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가치가 있음. 이 조직을 영농지원 복합조직으로 위치지어서 장기적인 농촌지원조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농기계 전문인력 확보

- 단순한 관리 인력보다는 수리와 정비 및 운전이 가능한 기능서비스 가능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많은 경우 비정규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실정인데, 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운전과 수리전문직을 만들어서 대응함과 동시에 병역복무 대체제도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등을 통해 농기계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함

□ 지역농업의 수요를 반영한 농기계 구입과 활용

- 임대용 농기계 구입방법은 사업목적과 대상인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입하고 활용되는 렌탈 방식이 바람직함
 - 물론 지역농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임대용 농기계와 작업기를 리스형식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가능한 농업인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를 기반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음

□ 기종별 임대기간의 차별화

- 대부분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임대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종별로 차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순 저가 농작업기와 농기계의 임대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단기임대가 적합함
 - 고가의 정밀 농기계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고, 관리와 수리책임의 명료화 그리고 보험이나 공제 가입의 상대적 유리성 등으로 인해 계절 단위와 연 단위 임대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임대료의 현실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무조건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의 현실화를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관리기간과 방법의 개선, 보험제도의 활용, 다른 사업과의 연계 추구 등의 세부 방안마련도 필요함
 -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별도 독립조직 시의 농산물 생산과 가공과정과의 연계, 다른 농자재의 활용 등까지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의 관리주체 등

- 일부이지만 농기계임대사업이 행정부서관리(지역농협으로 이관)와 농업기술센터관리로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기계임대사업비의 기금화 및 별도 분리 조직화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등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송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 31

발 행 2013. 2. 1

발 행 인 이동필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29-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